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19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서삼석 · 박용갑 · 신정훈
윤준병 · 김교홍 · 박수현
이원택 · 강득구 · 이병진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예방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해충의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1조의8 신설 등)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등(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8(병해충의 연구 등)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등은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병해충의 종류 및 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이용 및 신고 절차·방법,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식물검역기관의”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로 한다.

제5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1조의8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병해충 종류 및 이용 목적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구소등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 ----- ----- - <u>등(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u>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1조의8(병해충의 연구 등) ①</u> <u>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등은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병해충의 종류 및 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이용</u>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u>식물검역기관</u> 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u>및 신고 절차·방법, 보존·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u>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촌진흥청장</u> <u>또는 식물검역기관의</u>----- ----- ----- -----. 제5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31조의8제1항 후단을 위반 하여 병해충 종류 및 이용 목 적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구소등</u> ③ · ④ (현행과 같음)
---	--